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772
----------	-------

발의연월일 : 2025. 7. 28.

발 의 자 : 윤준병 · 조계원 · 박용갑
문대림 · 이병진 · 유동수
천하람 · 전용기 · 김기표
임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란 시장의 가격형성기능을 왜곡하거나 정보비대칭 등을 이용하여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기적 거래를 통칭하는 것으로, 현행법에서는 장내파생상품 시장에서의 중요 정보 이용,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교란행위, 불법 공매도 등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불공정거래행위는 갈수록 다양화·복잡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탄력적인 조치 수단이 부족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형사처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형사처벌 중심의 제재방식은 엄격한 입증책임 등으로 기소율이 낮고,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처벌수위가 낮은 등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기간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명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며,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26조의3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7조제1항 중 “100분의 5를”을 “100분의 10을”로 한다.

제426조의2제3항 본문 중 “6개월로”를 “1년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6개월의”를 “1년의”로 한다.

제4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정 기간(이하 이 조에서 “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을 “다음”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을 “행위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한기간을 정할 때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한기간은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제한명령 기간은 20년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6개월”을 “3개월”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요구”를 “요구 및 해당 주권상법인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재조치”로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편 제3장에 제4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7조의3(불공정거래에 관한 정보의 공표) 금융위원회는 특정 불공

정거래 행위가 위법으로 확정된 경우로서 해당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하는 금융거래 정보의 범위 및 공표 기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배에”를 “3배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40억원”을 “100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5억원”을 각각 “10억원”으로 한다.

제4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년”을 “3년”으로, “4배”를 “5배”로, “6배”를 “10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6배에”를 “10배에”로, “5억원”을 각각 “10억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07조(이행강제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406조제4항에 따른 주식처분명령 또는 제426조의3제7항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명령(이하 이 조에서 “처분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후 그 기한 이내에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상당한 이행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 또는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할 것을 명하고, 그 기한까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하여야 하는 주식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취득가액의 <u>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u>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제407조(이행강제금) ① ----- ----- ----- ----- ----- ----- ----- ----- ----- ----- ----- ----- ----- ----- ----- ----- ----- <u>100</u> <u>분의 10을</u> -----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26조의2(지급정지) ①·② (생략)	제426조의2(지급정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기간은 <u>6개월로</u> 한다. 다만, 금융	③ ----- --- <u>1년으로</u> -----. -----

위원회는 불법이익 은닉 방지 등을 위하여 지급정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④ ~ ⑧ (생략)

제426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426조에 따른 조사 결과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하 이 조에서 “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명령(이하 이 조에서 “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제한기간을 정할 때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한기간은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1년의-----
-----.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426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① -----

-----다음-----
-----행위를-----
-----.

1. 2. (현행과 같음)

② -----제한명령 기
간은 20년으로 한다. 다만, 금
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조정

1. ~ 3. (생략)

③ ~ ⑥ (생략)

⑦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 및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래제한대상자가 제한명령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내리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명령

2. 주권상장법인등이 제6항 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재임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임원선임·재임제한대상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원선임·재임제한대상자의 해임 요구

⑧ (생략)

<신설>

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

-----.

1. -----

-----3개월-----

2. -----

-----요구 및 해당 주권상법
인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재조치

⑧ (현행과 같음)

제427조의3(불공정거래에 관한

정보의 공표) 금융위원회는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가 위법으로 확정된 경우로서 해당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표하는 금융거래 정보의 범위 및 공표 기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9조의2(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29조의2(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① -----

-----3배 예-----

-100억 원-----

1. ~ 4. (생략)

②·③ (생략)

④ 금융위원회는 제17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10억원-----

-. -----

-----10억원-----

-----.

제443조(벌칙) ① -----
-----3년-----

-----5배-----10배-----

-----10배-----
-----10억원-----
-----10억-----

원으로 한다.

1. ~ 10. (생략)

② · ③ (생략)

원-----.

1. ~ 10.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